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



(사)전국^{''} 대리기사협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www.wedrivers.net 2 1666-5634

□ 본 자료집을 내면서...
[자료1]김 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자료2] 변론요지서
[자료3] 김종용(피고)의 진술서
[자료4]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5] 김종용회장 재판 판결문

□ 본 자료집을 내면서...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소중한 증언과 자료가 되길

본 자료집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횡령, 벌금과 업소비, 관리비와 출근비 등 부당이득금의 부과, 프로그램 쪼개팔기와 일방적인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에서 횡행하는 부당행위와 무도한 횡포는이미 세상에서 악명 높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김종용회장은 이러한 시장의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고 공정시 장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로지소프트사와 그 산하의 소위 '로지연합'등,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갖는 업자들은 반성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커녕, 김종 용회장을 소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지루한 재판을 치뤘습니다.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한 그들의 이러한 처신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당한 악행은 멈추기는 커녕, 변화된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변태를 거듭하며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대리기사권익운 동의 생생한 기록이며,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정리된 고발장입니다.

부디 이 자료집이 부당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개선하는 소중한 공론의 무기로 널리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업자들의 반성 및 상생과 함께 공정시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2017. 1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자료1]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 해당 수사관의 반성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의 승리입니다.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정당한 승리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403호 형사12부(부장판사 이 원형)는 12월1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대법원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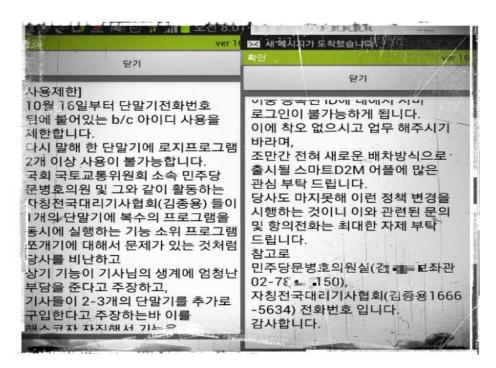
김종용회장과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 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저지와 불합리한 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리뉴스나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벌금과 업소비 부과, 불투명한 보혐료 정책, 무도한 배차제한의 문제점 등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호소해왔습니다. 각종 집회와 서명작업을 이끌고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대리운전법 입법캠페인등을 벌이는 등, 묵묵히 여러 방도로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 결정
-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참고인 자격 확보



그림 5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대리운전 시장의 무도한 횡포, 더 이상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송민기사장은 이 사태를 계기로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김종용회장의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고 업무방해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로지소프트 송민기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후, 로지사는 황당한 정책을 일방 발표하고, 그 책임을 문병호의원과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 탓으로 돌려 대리기사간의 이간과 분열을 획책하였다.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망신을 자초한 그들, 또 다른 장난을 모색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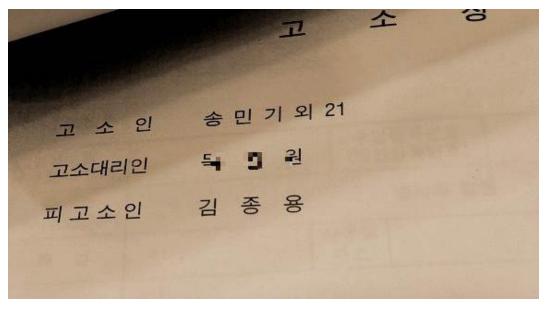
이에 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인 로지연합의 20개 대리운전업자들은 반성과 개선을 통해 대리기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귀기울여 하기는 커녕, 오히려 김회장의 배차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2013년, 가을철 국회 국정감사에서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상생을 통한 업계 발전을 제안했으나 이처럼 검찰고소로 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저들이 증거물이라 들이밀고 있는 김회장의 글들은 바로 그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나가고 고발하는 양심의 고발장인 것입니다. (성명서 바로가기 -> 로지소프트와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고소인: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로지A연합장인 하나로대리의 이영재, 로지B연합장인 부천 하이연합의 홍재선, 로지C연합장인 다솔대리의 이영종 등 로지연합의 20개 업체





▲ 로지소프트 송민기외 21인의 업자들, 김종용회장을 형사고소하며 공격하였다. 로지사의 목진원부장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 프로그램사인 그들이 갑중의 갑임을 스스로 자백하는데...

(고소인 명단 계속)

로지소프트 송민기/하나로 서비스 이영재/해피콜서비스 이진성/하이연합 홍재선 둘리대리 김해남/7080대리 장유진/다솔대리 이영종/천일대리 현남술 스타대리 김진환/MRC 송경숙/7080대리 정정석/(주)2580 최한석 국제대리 신문기//1911대리 강철/네트워크 김희정/1599 정정희 M company 최영진/KNS 권오경/한국대리....

2. 진행과정: 이어지는 적반하장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 21개 대리운전 업자들의 형사고소로 촉발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 중 터무니 없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 법 위반이 추가되면서 근 2년여에 걸쳐 10회공판까지 이어지고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24일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로지소프트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무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입니다. 모 수사관의 이유없는 겁박과 이어지는 횡포, 터무니 없는 가 혹행위가 오히려 김회장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아... 세상의 정의는 모두 죽어버린 걸까요.

3. 사필귀정, 김종용회장의 승리, 대리기사의 승리

이제 2심항소심 재판에서 김회장은 두사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대법원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무도한 횡포에 맞선 대리기사들의 활동에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내세워 세상의 정의에 맞서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은 반성과 함께 대리기사와의 상생을 위한 진정 어린 노력을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등장 등, 업계 안팍으로 급격한 변화와 격변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로지측은 이번 판결을 반성과 상생을 위한 계기로 삼아 겸허하고 진정 어린 자세로 업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한 죄를 덮어씌워 김회장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했던 수사관과 검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바른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서울고등법원 403호 형사12부 이 원형부장판사님 및 재판관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공정한 재판과 사회정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애써주신 이 학주변호사님, 김 동희변호사님께 깊이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재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2] 변론요지서

본 자료는 1심 재판의 이학주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입니다. 본 변론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온 이변호사의 정성이 가득 담긴 훌륭한 자료입니다.

사 건 2014고단2340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피고인 김종용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요지

- 가. 2013. 4. 1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인터넷 다음 사이트 '전국대리기사협회' 까페 게시판에 총 9회에 걸쳐 프로그램 공급사인 로지소프트사가 '패널티 벌과금', '업소비' 명목으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로지소프트사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개발하여 대리운전업체에 판매하였을 뿐,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위 금액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로지소프트' 프로그램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 나. 2014. 4. 25. 위 가.항과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과정에서 사이버범죄수사 팀장 경감 장관승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관승이 경장 서세욱에게 수사를 지시하는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통신비밀보호법위반).

2.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소사실을 <u>모두 부인</u>합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입니다.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대리운전업계의 주체로는 크게 '프로그램사',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프 로그램사는 대리운전 오더(order) 중개프로그램을 판매,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프로그램사로는 로지소프트(시장점유율 약 80%), 콜마너, 아이콘 등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손님들로부터 오더를 받고 이를 프로그램에 올리는 업체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소속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오더를 조회하고 선택하여 수행하 는 자입니다.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프로그램 월 사용료(프로그램 1개당 월 15,000원)로 수익을 얻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의 오더 수행 시마다 프로 그램사가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던 대리운전기사의 예치금에서 수수료(대리운전요금의 약 20%)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수행 후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 리운전요금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먼저 대리운전기사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 오더(order)중개 스마트폰 어플 (이른바 '프로그램'이라 합니다)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원하는 손님이 대리운전업체에 주문(오더)을 하면, 업체는 손님과 가격협상을 끝낸 후 출발지, 목적지, 가격 등을 적은 오더를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 사들의 휴대폰(스마트폰)에 전송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올라오는 '오더(order)'를 선택합니다(이를 '오더 콜한다'라고 합니다).

오더 콜을 한 대리기사는 주문한 손님에게 전화 를 걸어 다시 한 번 출발지를 확인한 후 손님을 찾 아가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자신이 콜 한 오더를 완 료하게 됩니다.

오더 수수료는 대리기사가 '오더 콜' 하는 즉시, 미리 예치해놓았던 가상계좌(프로그램사가 대리 운전기사에게 가상계좌를 만들어주며 대리운전 기사는 위 계좌에 일정액을 예치해야만 함)의 잔 고에서 자동으로 대리운전업체 구좌로 빠져나갑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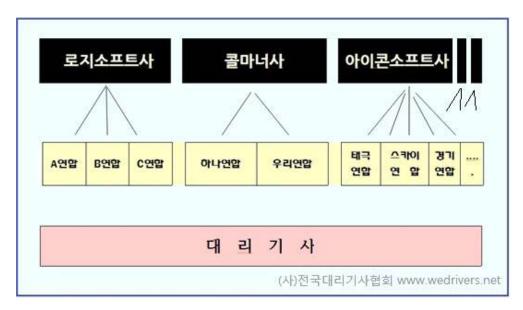


[대리운전 프로그램 화면]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오더 중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각 연합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로지연합(A, B, C 연합, 로지사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3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A, B, C 연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콜마너연합(하나, 우리 연합), 아이콘연합(태극, 스카이 등 연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대리운전업체가 접수한 오더를 반드시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속 업체의 오더를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u>업체는 접수한 오더를 프로그램에 올릴 뿐이고, 프로그램에 올려 진 오더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라면 누구나 조회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u>. <u>그러므로 동일 프로그램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들끼리는 오더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합이 형성된 것입니다</u>.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프로그램사의 주고객은 대리운전업체입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소속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만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사 입장에서는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아져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지소프트사는 업체들이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벌과금'과 '업소비'를 대리운전기사들이 부담하게 하여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방식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5) 벌과금의 부과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벌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스마트폰의 자그만 화면에 순간적으로 오르내리는 오더를 경쟁적으로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잡은 오더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가격이나 출발지, 도착지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기사가 선택한 오더를 취소할 시, 각 프로그램사는 건당 5백원~1천원가량의 벌과금을 기사에게 부과시켜왔습니다. 그림을 통해 벌과금 부과 과정을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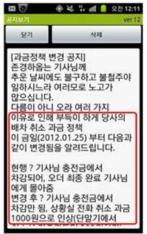
- (1) 석촌역- 공릉동 1만 5천원짜리 오더를 잡았습니다.
- (2)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10초 이내에 오더를 확정할 것인지 결정해 야 합니다.
- (3) 배차 취소를 클릭하면(배차 취소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10초 이내에 상세정보보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벌금 500원이 적용되고 자신의 가상계좌에서 벌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 (1) 석촌역 공릉동 1만 5천원짜리 오더를 잡았습니다.
- (2) 화면이 바뀝니다. 상세정보보기를 클릭하면 오더가 확정됩니다.
- (3) 오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더 취소를 하려면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벌금 1천원이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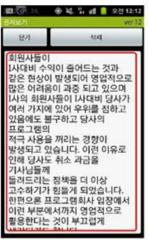
대리운전기사는 로지소프트사가 지정한 무브먼트 소프트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미리 충전 금을 예치시켜놔야 합니다. 벌과금은 로지소프트사가 지정한 가상계좌를 거쳐 자동으로 빠져나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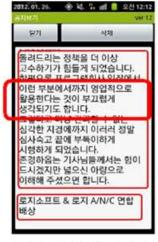




<로지사 과금정책 변경 공지문 2>



<로지사 과금정책변경 공지문 3>



<로지사 과금정책변경 공지문 4>

2012. 1. 이전까지 벌과금은 업체가 가져가지 않고 해당오더를 최종 수행한 기사에게 환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로지 프로그램 : 1회부터 500원, 전화 취소 1,000원, 업체들의 수익으로 귀속
- 콜마너 프로그램: 3회까지 무료, 4회째 300원, 5회부터 500원, 해당 오더 최종 수행기사에 게 환원함. (전화 취소 시 500원, 오더 발주업체의 수익으로 처리함)
- 아이콘 프로그램 : 500원, 업체들의 수익으로 귀속

로지소프트사는 2012. 1. 25. 자사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간 대리기사들에게 환원되었던 배차취소 벌과금을 대리운전업체들의 수입으로 전환한다는 일방적인 정책을 아래와 같이 자사의 이름(공지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변경의 주체를 명확히 "당사"라고 표기하고 있음)으로 발표하고 실행하여 업계 3위이자 경쟁사인 아이콘사와 마찬가지로 벌과금을 업체들이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금정책 변경공지]

배차취소과금정책이 금일(2012.01.25)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기사님 충전금에서 차감되어 오더 최종 완료 기사님에게 몰아줌. 변경 후: 기사님 충전금에서 차감만 됨. 상황실 전화 취소 과금 1,000원으로 인상 (단말기에서 취소 시 기존과 동일 500원 차감)

저희가 지금까지 기사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들이고자 배차 취소로 인해 발생된 과금을 기사님들의 수익으로 돌려드렸으나 <u>경쟁사인 I사(아이콘사)가 취소 과금을 당사의 방식과 달리 기사님이 아닌 소속회사로 귀속되는 정책을 영업적으로 적극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당사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였습니</u>

다. (중략) 상대적으로 당사의 회워사들이 I사 대비 수익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영업 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으며 I사의 회원사들이 I사 대비 당사가 여러 가지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프로그램의 적극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당사도 취소 과금을 기사님들께 돌려드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가 힘들게 되었 **습니다**. 한편으론 프로그램회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 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후략)"

그간 벌과금은 누적된 벌과금이 최종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환원되었기에 대리운전기 사들의 무책임한 오더 취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으로써 작용하였으나, **정책 변경 후에는 대리** 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프로그램사는 이러 한 수탈행위를 회원업체 확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로지소프트사 스스로도 "이런 부분 에서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라고 하며 자신들이 벌과금 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위 프로그램사인 콜마너사는 2012. 10. 11.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벌과금 협상을 타 결하고 벌과금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루 오더취소 3회까지는 벌과금을 물리지 않고 4회째 3 백원, 5회째부터는 5백원을 부과시키며, 이것도 해당오더를 최종 수행하는 기사에게 환원하기로 결정, 지금껏 시행하고 있습니다(전화취소의 경우는 5백원을 오더발주업체가 가져갑니다).

(6) 업소비의 부과

'업소비'란 술집이나 음식점이 대리운전업체에게 손님 을 소개해주고 지급받는 소개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 파구 방이동에서 안양까지 가는 운행비가 2만원이라면 그 중 3천원을 오더제공 음식점 등에 지급해야하는 오더를 말 합니다. 대리운전기사로서는 결국 2만원짜리 오더가 1만7천 원 정도짜리로 하락하여 손해를 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수료 20퍼센트도 별도로 부담합니다.

이 경우 2만원짜리 오더를 수행하면서 수수료와 업소비 를 합해 무려 6천4백원(34퍼센트)라는 수수료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다할지라도 그간 강남 일부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대리운전오더는 일반오더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들 이 있어왔기에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소비 부과에도 불구하 고 별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업소비 오더 화면. 2만원짜리 오더 에 업소비2천원이 부과된 경우. '소2'가 업소비 2천원이라는 뜻

로지소프트사는 스스로도 '업소비'라는 것이 대리운전업체가 업소에 부담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편법 영업행위라고 판단하여 업소비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금액적 부담을 주는 업체에 대하여 오더 공유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 4.경 로지소프트사는 돌연 정책을 변경하여 업소비 오더 기능을 프로그램에 추가한다고 공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격은 일반적인 대리운전요금에 불과하지만 업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오더들이 전면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과거 일반요금을 받고 수행을 하였을 오더들도 불필요하게 업소들이 개입하여 업소비를 받아가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

<u>하게 되었습니다</u>. 대리운전업체는 협력 업소들(식당, 술집 등)을 통해 오더 접수량을 늘려 수익 을 확대시키고 있고, 협력 업소는 업소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익들은 원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대리운전요금의 일부로서 업소비는 현재 대 리운전업체와 협력업소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프로 그램사는 이러한 수탈행위를 회원업체 확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 차수 조정

로지소프트사는 자신들이 단지 IT업체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로지소 프트사는 산하에 로지연합을 두고 '차수 조정'이라는 채찍과 '벌과금 및 업소비'라는 당근을 통해 대리운전업체를 통제(관리하는 대리운전업계 "갑 중의 갑"으로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원한과 고통 의 주범입니다. 수발주율과 차수 조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로지소프트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발주율'이란 '수주콜/발주콜'을 의미합니다. 수주콜이란 특정 대리운전업체가 하루에 수행 한 오더 수를 말하고, 발주콜은 해당 특정 대리운전업체가 하루 동안 생산해낸 오더 수를 말합 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리운전업체의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10명이라고 한다면 수주콜은 50이 되고(일반적으로 1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하루 5개의 오더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A가 하 루 동안 접수하여 생산해낸 오더 수가 50이라면 발주콜은 50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발주율은 50/50으로서 100%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대리운전업체 전체의 '총 수발주율'(=모든 대리운전업 체들의 총 수주콜/모든 대리운전업체들의 총 발주콜)이 100%가 되면 시장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 수발주율이 낮은 업체들이 증가하여 '총 수발주율'이 감소하게 되면 시 장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대리운전기사수를 줄이던 지, 아니면 접수 생산되는 오더수를 증가시켜야만 시장전체의 수요[굥급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지소프트사는 수발주율을 가지고 각 대리운전업체를 '1차', '2차' 등으로 분류 **하는 소위 '차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로지소프트는 차수조절을 무기 삼아 대리운전업체들 을 통제 ��리합니다. 즉 로지소프트사는 ① 업체마다 '메인1등급', '서브2등급', '서브3등급'으로 등급을 매긴 후, ② 등급마다 '1차', '2차' 차수를 구분하기 위한 수발주율을 정하고, ③ 등급 및 수발주율을 기준으로 차수를 조절하여, 차수별로 업체 간 차별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 다.

현재 대리운전업계는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리운전업체 연합끼리 오더를 공유 하는 체계입니다. 즉, 개별 대리운전업체가 만든 오더는 해당 연합(예를 들어 로지A연합)이 사용 하는 프로그램(예를 들어 로지A프로그램)을 통해 공유되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기사 에게 노출쩓택됩니다.

그런데 만약 로지A프로그램을 사용하는 abc라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들만 다른 기사들보다 20초 늦게 오더를 조회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봅니 다. 그들은 실제로 일감을 잡기 힘들게 됩니다. 단 1초, 2초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오더를 클릭해

야 하는 실정에서 20초라는 시간은 이미 오더가 다른 기사를 통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입니다.

현재 로지소프트사는 '2차'로 분류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들은 오더를 20 초 늦게 조회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2차 업체의 소속 기사들은 점점 해당 업체를 떠나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소속 기사가 업체를 떠나는 경우 소속 기사들로부터 지급받던 벌과금 등(이른바 '기사장사')에서 발생하던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업체로서는 반드시 1차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로지소프트사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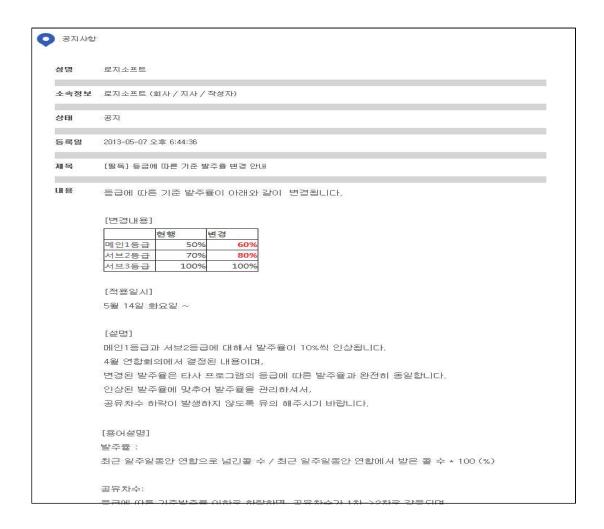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메인1등급 업체의 경우 수발주율을 60%만 맞춰도 1차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서브2, 3등급은 수발주율이 80, 100%이어야만 1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업체는 2차로 분류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로지소프트사의 총 애를 받아 메인1등급을 유지하거나, 수발주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급은 로지소프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은 로지소프트사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실정입니다(소문에 의하면, 로지 a, b, c 연합장과 아리랑대리 등 5개 업체는 차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기사를 모집하여 늘어난 소속 기사 수만큼 벌과금 등을 얻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지소프트사는 자신들 마음에 드는 업체에게는 이런 식의 혜택을 주어 업체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소프트사의 총애를 받는 대형대리업체들에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이 몰리고 그만큼 업체들은 기사장사로 인한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로지소프트사는 단순한 IT업체가 아닙니다. 정책의 결정[공지의 주체로 서, 산하에 로지연합을 두고 '차수 조정'이라는 채찍과 '벌과금 및 업소비'라는 당근을 통해 대 리운전업체 전체를 통제[관리하는 대리운전업계 "갑 중의 갑"인 것입니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단순히 로지소프트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위에서 수탈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공공의 이익") 게재된 것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절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



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게재한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① 10만 대리운전기사들은 한국적 음주문화 하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 및 제도의 부재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마저 수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 ② 로지소프트사는 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을 '벌과금' 명목으로 수탈하여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추가적인수익을 안겨주는 방법, 가격이 높지 않은 일반요금의 오더에도 업소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대리운전업체들이 지출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에서 수탈해가는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점에서 로지소프트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자초한 것이라는 점, ③ 피고인이 게시글을 통해 로지소프트사가 수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전국 대리운전기사들의 이익이라는 점, ④ <u>각종 언론사들도 위와 같은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들을 집중보도하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는 점(</u>첨부서류 언론기사 참조), ⑤ <u>피고인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회장으로서 대리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u>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피고인은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로지소프트사는 단순한 IT업체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제[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벌과금'과 '업소비'의 경우 이를 통제하고 정책변경을 공지하며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직접적인 주체였기에 **피고인은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와 형법 제314조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입니다.

(생략)

5. 정상관계 등

<u>피고인은 4년차 대리운전기사이자 사단법인 전국대리운전기사협회 회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인</u> <u>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u>.

학원사업과 무역업을 운영해오던 중 일본대지진이 터지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무엇이라도 열심히 하며 재기해보자는 몸부림으로 시작한 일이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리운전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당하고 살 수만은 없었기에 추운 겨울날 새벽거리에서 한 달이 넘도록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몸부림치면서 시작하게 된것이 대리기사권익운동입니다. 몇 달씩 월세방값이 밀려서 처자식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절박한 상황에서도 노예같은 삶을 강요하는 현실의 부조리가 피고인이 대리기사권익운동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관련법이나 정책,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대리기사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한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대리운전 업계는 정상적인 영업과 운영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대리운전업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대리기사들을 모집하는 것은, 이렇게 기사들에게 각종 부당이득을 수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TV와 라디오에 수없이 터져 나오는 대리운전광고에는

대리기사들의 눈물과 피땀, 그리고 원한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간 피고인은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고 다행히도 소기의 성과들을 얻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싱싱뉴스 오프라인판 창간준비 2호 중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참조). ① 문병호 국회의원을 통해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② 업계 2위 프로그램사인 콜마너사 및 그 소속연합업체들과 협상을 벌이고 벌과금 문제를 해결하여, 대리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풍토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어왔습니다. ③ 2013년 국회에서 대리기사 국회증언대회를 이끄는 등 대리운전업계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과 그 대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④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대리운전기사협회는 서울시로부터 업계 최초로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이런 현실과 대책을 <대리운전 싱싱뉴스>라는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20여개가 넘는 대리업체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게시글 <싱싱뉴스>는 이러한 대리업계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려나가고 해결책을 호소하기 위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업체들이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한 증거물이 아니라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한 대리운전기사들의 호소문인 것입니다.

6. 결 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유죄가 인 정된다 하더라도 위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판결문 1부

1. 언론보도(KBS, SBS, JTBC,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각 1부

1. 싱싱뉴스 오프라인판 창간준비 2호 1부

2014. 11. 10.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 학 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자료3] 김종용(피고)의 진술서

검찰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부당함과 모순을 말씀 드립니다.

1. 별개의 두 사건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위 두 개의 별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재판의 편리함을 위한 방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의 기소가 명분이 부족하고 논리가 취약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 합니다. 다시 말해, 별건의 통합은 관행일지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 각각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세상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렵고 힘든 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행위가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나가고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판단이라 봅니다.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및 20개 업자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 김종용의 글들은, 김종용회장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 그들 업자의 무도한 횡포와 악행을 고발하는 생생한 자료입니다.

2. 도둑이 칼 들었습니다.

도둑이 칼 들었습니다.

벌과금과 업소비 부과, 프로그램 쪼개팔기 등 피고가 작성해온 대리운전 싱싱뉴스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은 설령 부분적으로 표현이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언정, 대리기사들이 매일매일 업자들에게 당하는 무도한 횡포와 부당한 처우를 세상에 밝히는 대리기사들의 원한맺힌 함성인 것입니다. 업자들이 자신의 부당한 횡포를 회피하고 오히려 그들의 명예훼손의 증거로 제출될 자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이의 시정을 호소하며 불량업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과 검찰은 오히려 이것들을 엉뚱하게 피고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칼 든 꼴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실관계의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검찰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채, 로지소프트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기소한 것입니다.

3. 부당이득의 주도자는 로지소프트사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종용피고인은 대리운전 싱싱뉴스와 성명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하여 ㈜

무브먼트소프트사의 대표이사인 송민기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자의 '로지소프트' 프로그램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공소장 3p)

검찰은 대리운전시장의 페널티 과금과 업소비 부과가 사실임을 공소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업소와 대리운전업체가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서, 위 회사(로지소프트사를 지칭-피고 주)는 페널티 과금과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개발하여 이를 대리운전업체에 판매하였을 뿐,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위 금액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공소장 2페이지)

하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페널티와 업소비 부과의 공지 주체는 로지소프트사입니다. 대리기사는 로지소프트사가 지정한 가 상계좌에 충전금을 입금시키고, 로지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널티와 업소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뜯긴 이 돈들은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가 운영하는 무브먼트소프트사의 구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 돈들을 분배하는 주체 역시 로지소프트사입니다.

즉 대리기사가 벌금을 빼앗겨서 집결, 분배되는 과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로지소프트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로지소프트사는 이러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갑질을 통해 많은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듯, 로지소프트사는 단순한 IT업체가 아닙니다.(별첨자료 참고 바랍니다.)

피고는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벌과금들이 어떻게 대리운전업체에게 '고스란히' 분배되고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로지소프트사는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대리기사들로부터 부과해서 모여지는 엄청난 벌과금을 쥐고흔드는 로지소프트사가 한푼도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시는지요? 대체 로지소프트사의 대표이사인 송민기가 운영하는 회사로 얼마나 되는 페널티가 모여지고 얼마가 어디로분배되기에 그런 판단을 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원한과 반대를 무릅쓰고 벌과금을 고집하는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업자들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업자들이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본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로지소프트사, 강도짓을 할 칼을 만들어 주는 꼴입니다.

피고는 로지소프트사가 페널티와 업소비를 독점한다고 글을 쓴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로지소프트사는 업계 1위의 프로그램사로서 산하에 포섭된 로지연합과 함께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득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별도로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백보를 양보해 로지소프트사가 한푼의 벌과금도 갈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지소프트사는 그



부당이득금을 업체들이 갈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범자인 것입니다.

업소비를 업체들이 갈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대리기사들에게 공지를 하고, 자신들의 프로 그램을 통해 대리기사들 주머니돈을 빼앗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범입니다. 강도가 강도짓 하도 록 칼을 만들어주는 공범자인 것입니다.

5.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였습니다.

무법상태, 무한경쟁의 업계 상태를 악용한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업자들의 횡포에 대해 이미 각종 신문과 방송 등은 수도 없이 보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언론사들도 죄를 지은 피고인들이란 말입니까? (별첨자료 3 참고 바랍니다)

이 사회의 가장 맨바닥에서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에 허덕대는 대리기사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각종 약탈을 일삼는 업계의 시스템과 풍토는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일소되고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세상에 수수료를 40퍼센트가 넘게 부과할 수 있다니요? 10초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5백원이니 1 천원이니 자동으로 뜯어가는 일이 매일이면 수십만건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대리기사로 살면서 이 야만적인 대리업자들의 약탈경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시작한 권익 운동입니다. 추운 겨울의 혹독한 바람을 맞으며 새벽집회를 개최하여 동료기사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부족한 잠을 무릅쓰고 국회이건, 정책당국이건, 공정거래위원회이건, 신문사이건 tv방송이건 쫓아다니며 부당한 현실을 알려나가고 이의 개선을 위해 세상이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날들을 이러고 지내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예같은 업계의 종사자로서 이 잘못된 현실을 몸소 깨닫고 겪고 있는 한, 작은 힘이나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다행히도 이 부당한 현실을 이야기 듣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분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횡포에 당해 쓰러져있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려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고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오늘밤도 몇푼 돈을 집에 가져다주기 위해 길거리에서 내몰리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나마 대리기사라도 하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겨운 노동이 누군가의 수탈로 얼룩진다면, 이를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고 사회정의 아닌가요?

참으로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대리기사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풍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대리기사는 물론, 시장의 분규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의 발전,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져야 할 이 사회의 자산이라 믿습니다.

편협한 시각과 부족한 인식을 토대로 사건을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려는 대리업자들과 검찰의 부당함은 또 다른 이 사회의 악행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사회의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검찰의 처사라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대리업계의 현실과 문제점, 그 해결을 위한 방도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모색하고 있고, 현장의 대리기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디 그나마 피어나고 있는 대리기사 권익운 동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판사님의 깊은 고려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자료4]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본 자료는 김종용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에 보험료 횡령, 벌금과 업소비, 관리비와 출근비 부과 등의 기사장사, 프로그램쪼개팔기와 무도한 배차제한 등, 대리업계의 형편 없는 현실이 잘 정리된 자료입니다.

1. 대리운전 시장의 운영 시스템

1) 대리운행의 수행 과정

(생략, 자료2.변론요지서 참고 바랍니다.)

2) 로지연합, 콜마너연합, 아이콘연합

(생략, 자료2.변론요지서 참고 바랍니다.)

3)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

각 프로그램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IT회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속사들을 포섭하여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물론, 산하에 각 연합장들을 배치하고 차수조정과 벌금 배분등의 수단을 통해 소속사들을 관리 통제하는 슈퍼갑입니다.

한편 대리프로그램을 구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리기사들임에도, 자사의 프로그램에 오더를 올리는 당사자는 대리회사라는 독특한 시장 구조상 실제 각 프로그램사의 주고객은 프로그램 구매자인 대리기사가 아니라 대리회사입니다. 즉, 더욱 많은 대리업체들이 자사의 프로그램에 오더를 많이 올려줘야 대리기사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입니다.

로지소프트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리기사들로부터 벌금과 영업비를 부과시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소속사들에 배분함으로써,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속사에 대한 영업비, 로비자금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지소프트로서는 자신의 부담없이 대리기사 돈을 가지고 업자들에게 생색내고 그럼으로써 소속 업체들을 확대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악어와 악어새, 힘없는 대리기사들의 주머니돈을 뺏어서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나눠갖는, 혹은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지소프트사는 그들이 주장하듯,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것입니다.



금번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에 대한 명예회손 고소사건의 유일한 대리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로지소프트사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과금 부과 공지의 당사자이고, 업소비오더 정책 공지의 당사자라는 점, 협력사(혹은 프로그램운용의 실제회사)인 무브먼트소프트사의 가상계좌에 대리기사들의 가상충전금을 입금토록하여 운용 관리하는 점, 자사의 로지프로그램을 통해 벌과금을 자동으로 부과시키고 총 벌과금을 집결, 배분하는 주체라는 점 등, 대리운전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는 충분히 입증되는 것입니다.(아래 [그림4,5,6,7,8] 참고 바랍니다.)

그렇기에 2012년 전국대리기사협회가 벌과금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가 일반에 많이 알려진 1577 등의 유명 대리영업회사가 아닌, 제2위의 프로그램사 콜마너사였던 것이었고 결국 프로그램사인 콜마너사가 결정함으로써 콜마너연합의 벌과금 문제는 타결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 [그림의 참고 바랍니다.)

로지소프트사는 자신들이 벌과금의 수익자가 아니라 단순한 중개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 스스로 부당이득 수익의 공범자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임은 별도로 해도, 그 주장을 인정 받으려면 그들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로

지소프트사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를 거쳐, 자신들의 관계사로 집결되는 어마어마한 벌과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벌과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공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아래에 보충합니다)

2. 로지소프트의 프로그램 쪼개팔기

로지소프트사는 시장의 절대적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로지프로그램을 세개로 쪼개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로지사는 한정된, 거의 똑같은 오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로지a, b, c로 나눠서 각각 매월 일정한 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지소프트사가 주장하듯이, A,B,C 3개의 연합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각기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라면, 각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오더가 달라야 합니다. A,B,C 로지프로그램이 각기 별개의 상품이기에 별개의 가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의 똑같습니다. 화면 출현의 시간을 몇초 차이로 차별을 두는 등, 수법을 사용하여 궁박한 상황에 처한 대리기사들의 심리를 이용, 추가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쪼개팔기로 인해 대리기사들이 당하는 피해는 프로그램 추가구입등의 금전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여러개 취급해야 하기에 단말기(스마트폰)도 별개로 구입, 복수로 사용해야 하며 그 추가비용과 번거로움도 적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프로그램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로지소프트사의 수익 감소는 프로그램 가격의 조정을 통해 벌충하는 등의 방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협회는 언제건 이를 위한 소통과 논의에 충실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2]로지 A,B,C 세 개의 프로그램을 분할 설치한 화면. 세 개의 프로그램에 올라오는 오더가 그 내용이나 숫자가 동일합니다. 같은 오더들을 가지고 프로그램만 세개로 쪼개 팔고 있는 것입니다.

3. 벌과금 부과

로지소프트사는 2012. 1. 25일, 자사의 로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간 대리기사들간에 환원되던 배차취소 과금을 업체들의 수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자사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하였습니다.

1) 벌금의 현황

대리기사에게는 기사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스마트폰의 자그만 화면에 순간적으로 오르내리는 오더를 경쟁적으로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잡은 오더를 좀더 자세히 보면 가격이나 출발지, 도착지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선택한 오더를 포기할 시, 각 프로그램사는 건당 5백원이니, 1천원이니 하는 벌과금을 기사에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1월 이전까지 이 벌금은 업체가 가져가지 않고 해당오더를 최종 수행한 기사에게 환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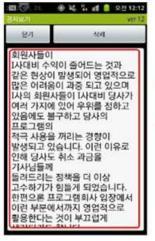
- 로지 프로그램 : 1회부터 500원, 전화 취소 1,000원, 업체들의 수익으로 귀속
- 아이콘 프로그램 : 500원, 업체들의 수익으로 귀속
- 콜마너 프로그램 : 3회까지 무료, 4회째 300원, 5회부터 500원, 해당 오더 최종 수행기사

에게 환원함. 전화 취소 500원:오더 발주사의 수익으로 처리함











<로지사 과금 정책 변경 공지문 1>

<로지사 과금정책 변경 공지문 2>

<로지사 과금정책변경 공지문 3>

<로지사 과금정책변경 공지문 4>

[그림 4]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은 2011년 1월 벌과금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변경된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 로지소프트사의 정책 변경

로지소프트사는 2012.1.25일 다음과 같은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 경쟁사인 아이콘사와 마찬가지로 벌과금을 대리회사들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배차취소과금정책이 금일(2012.01.25)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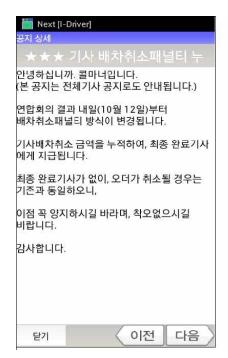
현 행: 기사님 충전금에서 차감되어 오더 최종 완료 기사님에게 몰아줌.

변경후: 기사님 충전금에서 차감만 됨. 상황실 전화 취소 과금 1,000원으로 인상(단말기에서 취소시 기존과 동일 500원 차감)

저희가 지금까지 기사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들이고자 배차 취소로 인해 발생된 과금을 기사님들의 수익으로 돌려드렸으나 경쟁사인 I사(아이콘사를 말함-민원인 주)가 취소 과금을 당사의 방식과 달리 기사님이 아닌 소속회사로 귀속되는 정책을 영업적으로 적극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당사는 불청주야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중략)... 이런 이유로 인해 당사도 취소 과금을 기사님들께 돌려드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른 경쟁프로그램사인 아이콘사가 이미 벌금을 1,000원으로 인상하여 소속 대리업체가 차지하도록 정책을 바꿈으로써, 업체들로 하여금 아이콘 프로그램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 2) 로지소프트사 소속 대리회사들은 그이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로지연합에서 이탈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 3) 이에 로지소프트사는 자사 소속 대리회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아이콘사처럼 벌금을 1천원으로 100퍼센트 인상하고 소속회사가 차지하도록 하여 업자들의 부당한 이득을 보장해준다.





[그림 24] 제2위 프로그램사인 콜마너사는 2012년 11월,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벌과금 협상을 타결 짓고 자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기사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의 '취소벌금 합계500'는 이 오더취소로 인해 부과된 벌금 합계로서, 이 오더최종

기사에게 환원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사인 아이콘사가 취소벌금을 소속회사로 귀속되는 정책을 폄으로써 자신들 회원사들이 이탈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고...

그 주범은 로지소프트사와 로지 A/N/C 소속사들임을 스스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간, 대리기사들의 무책임한 오더 취소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부과시 켰던 벌과금이 결국은 대리업자들 배를 불리는 삥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콘 회원 업자들은 그간 벌과금을 뜯어먹으며 배를 불렸고, 이에 경쟁사인 로지소프트사 회원 업자들 에게도 그러한 부당한 갈취금을 보장함으로써 업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 러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행위임을 자백하는 글도 보입니다.

3)벌과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콜마너와의 협상 타결

한편, 제2위의 프로그램사인 콜마너사는 2012년 10월11일,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벌과금 협상을 타결짓고 벌금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즉, 콜마너사는 하루 오더취소 3회까지 벌과금을 물리지 않고 4회째 3백원, 5회째부터는 5백원을 부과시키며, 이것도 해당오더를 최종 수행하는 기사에게 환원하기로 결정, 지금껏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취소의 경우는 5백원을 오더발주업체가 가져갑니다.) 이는 로지소프트사의 벌과금 부과가 얼마나 부당한지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4. 대리운전 보험료 횡령 혹은 배임

대리기사들은 일을 하기 위해 매달 6-8만원 정도의 대리운전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개인보험을 인정해주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보험을 강제하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소속 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자신이 지불하는 대리운전 보험 증서도 하나 받지 못합니다.

대리운전업체는 각 개인별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쪽수만큼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는 가입을 회피하거나 보험료 중 일부를 백마진으로 돌려받는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실제 대리운전업자들간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수익구조의 일부로 편입되어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틈틈이 노출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글은 관련 기사를 옮겨 실은 것입니다.

대구대리운전노조, 보험료 횡령사건 조속수사 촉구

등록 일시 [2011-12-23 15:51:34]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111223_0010074360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대구지역 대리운전 보험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 사기건과 관련, 대구시대리운전노동조합 등은 23일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대구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 민간서비스연맹 등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운전 종사자들에게서 받은 보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횡령에 관한 의혹 건에 대해 대리운전 업체의 검찰의 책임 있고, 투명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 4월 22일 지역 한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대리운전 업체들의 대리운전 보험료 횡령 내용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경찰은 대구지역 대리운전회사 3곳의 콜센터를 대상, 6개월간 인지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곳의 업체에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대해 수억 여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밝혀 졌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조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아래 수사가 진행될 계획이라는 수사 진행과정을 전달 받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경찰조사에서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한 의혹건이 나왔지만,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혹만이 제기되고 있을 뿐 검찰이 조사결과 등을 차일피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대리운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의 문제는 한 지역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사안을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분 명히 했다.

또한 "지역 내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전국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실태조사에 도 착수, 보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횡령은 물론 대리운전 시장에 만연해 있는 콜센터의 비리에 대해 법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지역 내 피해 당사자들인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프로그램 사기 금액 반환 소송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chc@newsis.com

5. 약탈경영과 기사장사

대리운전 시장은 그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방치됨으로써, 그 무법천지를 악용한 업자들의 약탈경영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벌과금 부과, 보험료 횡령, 업소비 부과등, 업자들이 대리기사들을 그러모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빼가는 것을 대리운전시장에서는 흔히 '기 사장사'라 표현합니다.

이런 약탈경영의 중심에서 대리기사들의 오더 취소를 이유로 5백원이니 1천원이니 매건마다 벌 금을 물려 떼가고, 자신들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덮어씌우는 '업소 비오더'의 유도 당사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뻔한 오더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3개로 쪼개 팔아 많은 대리기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제2위 업체인 콜마너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이 극히 적은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다시 대리기사들 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기사 뜯긴 벌금, 똥콜되어 돌아온다.

특히나 벌금부과조치는 대리기사들이 뺏기는 벌금액수도 문제지만, 벌금을 뜯어가기 위한 업자들 의 장난질로 인해 시장을 병들게 하고 착취의 악순환을 낳는 악성 병폐입니다.

즉, 업자들은 정상적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낳아 회사를 경영하려하기 보다, 손쉽게 대리기사들에 게 벌금을 뜯어 배채우려 하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영업해서 예컨대, 1만5천원짜 리 오더를 만들어 3천원수수료(20%)를 벌어들이느니, 벌과금 2-3개 뜯어먹는게 낫다는 심보를 만 들어냅니다.

그리하여 터무니 없는 오더를 만들어서 콜취소를 유도합니다. 터무니 없는 근무조건, 터무니 없 는 작업환경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와의 끊임없는 분쟁이 야기되고, 이 경 우 업자들은 기사들의 일감을 빼앗는 행위(소위 배차제한)를 마음껏 저질러 대리기사의 저항을 틀어막습니다.



6.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리운전시장을 위해

대리운전업은 이제 한국적 음주문화 하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련법이나 제도도 없기에 부당한 횡포와 불합리한 시스템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인 문병호의원은 2013년7월 합리적인 대리운전법안을 입법발의했고, (사)전국대리 기사협회는 이를 적극 협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및 운용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부당한 처우로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의 하루하루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힘겹기만 합니다.





[그림 11] 대리기사들의 새벽집회: 매일밤, 대리기사들의 손아귀에 움켜쥔 원통함과 분노,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조를 갈망합니다.

표준요금제를 실시하고, 벌과금문제의 합리적 해결, 투명한 보험정책 실행 등, 업체들의 최소한의 소통과 동참만 있어도 지금 바로 충분히 해결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제2의 프로그램사인 콜 마너사와 콜마너연합은 본 협회와 벌금문제를 타결짓는 등, 항시 소통과 합리적 방도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지소프트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로지소프트사의 자세전환만 주어진다면, 이 터무니 없는 대리운전시장의 합리적 조정과 시장의 분규예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한결 더 보장토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소송을 꾀할 것이 아니라 성찰과 상생을 꾀할 때입니다. 상호 소통을 위한 진지한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여러면에서 대리운전시장은 진화해왔습니다. 과거,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고용한 몇몇 대리기사들이 무전기를 들고 비싼 가격에 고립적으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던 시대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 편리한 대리운전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일반시민들의 편안한 귀가와 안전한 교통문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화, 변화한 시장을 합리적으로 교 통정리하고 공정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실패함으로 써, 시장의 분규가 끊이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통이 격화하며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적저하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는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을 증인으로, 본협회 회장인 본인을 참고인으 로 출석시켜 문제해결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 는 이제 대리판의 무도한 횡포와 대리기사 고통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를 반영한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서 그들의 죄과를 묻고 개선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림 12]2013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종용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습니 다.

지금도 각 신문과 방송은 대리운전시장의 문제점과 대리업자들의 횡포, 대리기사들의 눈물겨운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20만여명, 연 매출 5-6조원의 시장(추 정),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의 한 방도가 되버린 대리운전, 이제라도 하나 하나씩 정상화시켜야 합 니다.

저희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비록, 자그마한 힘이지만 이를 위한 논의와 협조를 위해 최선 을 다하려 합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소통을 위한 자세 변화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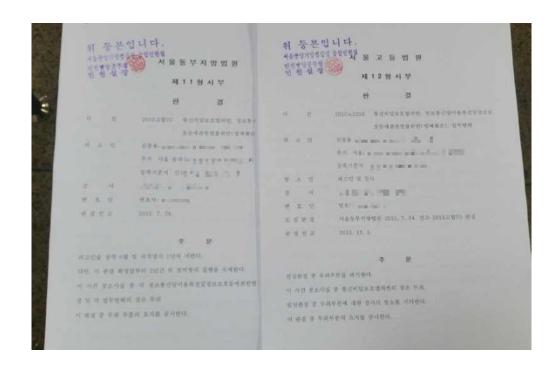
제출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 종용 2014. 10.

[자료5] 김종용회장 재판 판결문

<1심 판결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들의 단체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무브먼트소프트(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대리운전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4.19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9길 11.301호(석촌동)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전국대리기사협회'카페(http://cafe.daum.net/wedrivers)게시판에 '대리기사 싱싱뉴스 40호: 로지타파, 수수료 인상음모 저지 투쟁 본격화'라는 제목 아래 "주요 프로그램 공급 사인 로지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의 횡포가 끝이 없습니다.(중략) 패널티과금의 갈취를 주도 하며 대리기사들의 착취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위 '업소비오더'를 만들어내어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업소비라는 명목으로 대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를 대리기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이제는 30퍼센터 40퍼센트, 심지어는 50퍼센트가 넘는 살인적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4.14, 경부터 2013.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에 걸쳐 피해회사가 '페널티 과금', '업소비' 명목으로 대리기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패널티 과금'은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콜을 받았다가 취소할 경우,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기사에게부과하는 배차취소금이고, '업소비'는 유흥주점 등에서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손님에게 연결해주고 일반 대리비에 일정금액이 추가된 요금을 받은 다음 그 금액을업소와 대리운전업체가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사, 위 회사는 '패널티과금'과 '업소비'가 포함된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개발하여 이를 대리운전업체에 판매하였을 뿐대리기사들로부터 위 금액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로지소트프' 프로그램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허위사실 적 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유포기타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4949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을 개재할 당시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리운전은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접수하면 운행 정보를 피해 회사가 공급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서버에 등록하고, 대리기사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피해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여 운행정보를 조회한 다음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 운행정보를 클릭하여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리운전요금은 대리기사가 먼저 일정한 금액을 피해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한 다음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서고객이 요청한 운행정보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으면 패널티과금, 업소비, 수수료 등이 대리기사의 가상계좌에서 공제된 후 대리운전업체의 요청에 따라 피해회사의 가상계좌에서 일정한 수수료 등이 대리운전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운행정보를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정산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피해회사가 공급하는 로지소프트라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 2) 패널티 과금은 대리기사가 고객의 대리운전 오더를 선택하였다가 취소한 경우 부과되는 배차취소과금으로 2012.1경 이전까지는 배차를 취소한 대리기사의 가상계좌의 충전금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었다가 대리운전 오더를 최종적으로 수행한 대리기사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피해회사는 2012.1.25경 배차최소과금 정책을 변경하면서 "대리기사들에게 배차취소금을 종전과 같이 대리기사님들에게 돌려드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힘들게 되어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 3) 업소비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요청하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업소를 단골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영업비용인데, 피해회사는 업소비에 대하여 2009.7.6, "업소비 명목으로 기사에게 금액적 부담을 주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에 통보 없이 모든 공유가 제한됩니다"라고 공지하고 2013.1.10, "기사님에게 업소에 영업비 지급을 요청하는 회원사 공유가 제한되도록 합니다. 유예기간은 1월말까지이며, 2월1일 이후에 기사님이 업소 영업비 지급을 요청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공유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라고 공지하는 등, 대리운전업체가 부담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리운전 오더의 공유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제를 가혀였다. 이후 피해회사는 2013.4.12경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오더를 공식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들에게 공급하였다.
- 4) 페널티 과금, 업소비를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피해회사가 공급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리기사들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피해회사의 가상계좌 충전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후 피해회사와 대리운전업체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산 방식, 정산비율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대리기사들이 알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해회사가직접 대리기사들에게 패널티 과금 정책의 변경, 업소비 오더의 공식화 등에 대한 공지까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직 간접적으로 피해회사가 페널티 과금, 업소비에 대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
- 5) 피해 회사의 패널티 과금의 정책 변경으로 종전 대리기사들에게 귀속되었던 배차취소금이 대리운전업체에 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오더가 공식화되었으나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등록된 업소비 오더가 종전과 같이 일반적인 대리운전 요금 외에 실제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될 업소비가 포함된 오더인지 또는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할 업소비가 없음에 대리운전 업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일반적인 대리운전 오더에 업소비를 포항하여 형식상 업소비 오더로 등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리기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업소

비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리운전 오더까지 업소비 오더로 등록될 수도 있어 대리기사 들이 종전 부담하지 않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상황의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외의 다른 대리기사들도 언론과 대리운전업계의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대리기사 중 일부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기사들도 피해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하여 이 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7)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소개하면서 "과다한 수수료, 부당한 벌금제도, 이중삼중의 보험료, 듣보잡 보증금, 배차제한 등 여러 불공정형태로도 모자 라 대리운전업 1위 프로그램업체인 로지소프트사가 운행오더의 수수료 외에 별도로 업소비 를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리업체들이 깨알같이 수수 료를 떼어가고 그 위에서소프트웨어 업체가 또 돈을 뜯어가는 구조였다"고 지적하였고, 언론

사들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피해회사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 중재위원회 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는데,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실재하 는 사실을 보도하여 정정할 것이 없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 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당의 위원회나 언론사들 역시 피고인과 같이 피해회사가 패널 티 과금, 업소비 등을 대리기사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대외적으로 이 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송민기는 대리운전업게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요구 받기도 하엿다.

- 8)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대리기사들로부터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 의 내용을 대리기사들의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국회, 언론사, 시 민단체 등에 제보하였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 였으며, 피해 회사를 상대로 대리기사들과 함께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회 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외적 활동을 통해 피해 회사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9)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각 기재 글은 그 작성 경위, 동기, 피고인이 구체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지위, 업무,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한 대외적 활동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 사로 인하여 페널티 과금정책, 업소비 오더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이익을 얻 고 대리기사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인식하에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갈취', ' 패악질', '횡포', '악종'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시사실 중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한(명예 훼손)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조재헌/이성욱

<2심 판결문>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 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 이 상세하게 기재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회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중 페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하여 단순히 대리운전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 면서 반박하고 정정보도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회사가 직접 대리기사들에 게 페널티 과금 정책의 변경, 업소비 오더의 공식화 등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로지소프트 & 로지 A/N/C연합' 명의로 여러 차례 공지를 해왔던 상황에서 피해 회사와 대리운전업체들 사이에 프로그램이 정책 변경에 관한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책 변경이 그들 사이의 대리운전요금의 정산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은 외부 사람들이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회사의 반박과 언론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2) 피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와 대리운전업체 사이에 프로그램의 정책 변경에 관한 의사 결정이 어떠하게 이루어지는지, 정책 변경이 그들 사이의 대리운전요금의 정산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지문 등 피고인이 위 게시글 내용 과 같이 인식한 근거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궁할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유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 바, 위 제2의 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김진석/00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2012년 설립(초대회장 김 인태)2014년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인가 (회장 김 종용)

2. 대표번호: 1666-5634 이메일: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3. 싸이트: www.wedrivers.net 또는 cafe.daum.net/wedrivers cafe.naver.com/wedrivers

4. 주 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사)전국["] 대리기사협회

www.wedrivers.net 1666-5634

- 1)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사업
- 3) 상호부조와 후생복리 및 친목 사업
- 5) 대리운전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업
- 2) 교육 및 정보교환을 통한 자질향상사업
- 4) 대리기사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사업
- 6) 협회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Korea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社团法人 全国代驾司机协会

- http://www.wedrivers.net (or cafe.daum.net/wedrivers)
- Tel: +82-2-6448-0579 Mobile: +82-10-4941-5634 (Mr.Kim, President)
- Email: wedrivers@daum.net or wedrivers@naver.com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밴드: band.us/@wedrivers
- weibo: www.weibo.com/wedrivers
- Twitter: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社团法人 全国代驾司机协会)
- Facebook: www.facebook.com/drmanzok
- Youtube: www.youtube.com/playlist?list=PLHvkVZo_t-Wb1MGOz3X_DH3NN4aM96dKD
- Address: 188-7, Jangchungdong2ga, JungGu, Seoul, Korea



(사)전국<mark>"</mark> 대리기사협회

www.wedrivers.net 1666-5634